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55

제출연월일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휴업·폐업"을 "휴업 또는 폐업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휴업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	제16조(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		
업 등) ① 대행자는 업무를 <u>휴</u>	업 등) ① <u>휴</u>		
업·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	<u>업 또는 폐업</u>		
재개(再開)하고자 하는 때에는			
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			
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			
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		
	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		
	아니하다.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